

교육훈련생활 감점 기준표

구분	항 목	감점기준
1급	1.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하였을 때	퇴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할 때 - 3주 이하 과정(3일 이상), 4주 이상 과정(5일 이상)	퇴교
	3. 감점성적이 훈련성적 총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때	퇴교
	4. 교육질서를 극히 문란하게 하여 5회 이상 감점 당할 때	퇴교
	5.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였을 때	퇴교
2급	1. 승인 받지 않은 결석(1일)	2.0점
	2. 승인 받지 않은 수업 불참(1시간당) - 결강, 이석, 조퇴, 지각, 외출 등	0.25점
	3. 승인 받은 결석(1일)	0.5점
	4. 승인 받은 수업 불참(1시간당) - 결강, 이석, 조퇴, 지각, 외출 등	0.05점
	5. 시험태도불량(1회) - 5회 경고(감점) 후 시험장 퇴실 및 시험 무효 처리	2.0점
	6. 교육질서 문란(1회)	2.0점
	7. 학습태도불량(1회)	0.5점
	8. 교육훈련 관련 정당한 지시사항 위반(1회)	1.0점
	9. 흡연(지정장소이외에서, 1회)	1.0점
	10. 기타 준수사항 불이행(1회)	0.5점
3급	1. 정당한 사유로 승인을 받고 외박할 때 (1회에 한하며, 수강에 지장이 없어야 함)	0.3점
비감점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공가의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의 경우 3. 장애인 신체적 장애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참여가 어려운 교육 활동 4. 임산부의 정기검진의 경우 5. 대학 등 재학 중 시험 및 입학, 졸업식 참석이 필요한 경우	-